

수신자 각급학교 학교장
경 유 각급학교 행정실
제 목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2025년도 공제사업 운영 안내

1.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www.edu-safety.org) 으로, 교육기관 중 본회에 별도의 입회 절차를 거친 기관만 회원으로 본회의 공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는 다른 별개의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25년도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제사업 안내

1) 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회원 기관의 외부 현장체험활동 중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2)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회원 기관의 외부 체육관련 교육활동 (예시: 생존수영, 훈련, 스키캠프 등 교외활동)

중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나. 회원 지원 사업

1) 치료비 지원 사업

본회 회원으로 공제사업(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외부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15세 미만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본회 회원으로 공제사업(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외부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 또는 공제에서 보상하지 않는 15세 미만 사망 보험금(공제금)을 대신하여 사망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3) 가스안전공제 무상가입 지원 사업

본회에 입회한 교육기관 중 신청기관에 한하여 가스안전공제 무상가입을 지원합니다.

※ 붙임. 공제사업 안내서 1부 끝.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이사장 정학균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이사장
과장 정진우	부장 김봉진	국장 이진원	정학균
문서번호	사무국-004(2025.03.04.)	시행일	2025.03.04.
12931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550 A동 10층 11,12호		http://www.edu-safety.org	
전화 : 1600-5312 Fax: 070-7614-2512		kesma@edu-safety.org	

※ 붙임. 공제사업 안내서

■ 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사업

◦ 「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사업목적

회원으로 입회한 교육기관의 외부 교육활동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보장사항

보장사항	보장한도	비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억원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장해	3천만원	
현장체험학습 중 배상책임	1천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만원
현장체험학습 중 휴대품손해	2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1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부상 치료비	5 ~ 400만원	등급에 따라 지급
상해 및 질병 수술비	30만원	
특정전염병위로금	30만원	
상해 및 질병 입원비용	10만원 ~ 50만원 한도	3일이상 시
식중독 입원비용	20만원	2일이상 시
만15세 미만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3천만원	※참고. 회원기관 지원 사업
현장체험학습 중 치료비 지원	최대 1백만원	

※ 참고. 회원기관 지원 사업

15세미만 사망 위로금 지원 사업은 본회 정관 「제43조의 2(위로금 지급) ① 본회의 회원학교 중 만 15세 미만자가 교외 교육활동 중 사망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지원합니다. 또한 치료비 지원 사업은 본회 정관 「제43조의 3(치료비 지원) ① 본회는 회원학교의 안정적 교외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회의 회원 기관의 교육활동 참여자의 교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 따라 지원합니다.

◦ 「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공제료

가입대상	무박1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7박7일
유/초등학교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중학교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고등학교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성인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사업

◦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사업안내

회원으로 입회한 교육기관의 외부 체육관련 교육활동 (예시: 생존수영, 전치훈련, 스키캠

프 등 교외활동) 중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여 외부 체육관련 교육활동에 대한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보장사항 : 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와 동일합니다.
-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공제료

가입대상	무박1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7박7일
유/초등학교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중학교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00
고등학교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성인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 지원 사업

- 「가스배상책임공제」 사업안내

교육기관 중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가스 안전법상 가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본회에 입회한 교육기관 중 신청기관에 한하여 무상가입 통해 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가스배상책임공제」 보장사항

구분	대인		대물
	1인당	1사고당	1사고당
보장한도	8천만원	무한	3억원

- 「가스배상책임공제」 공제료 : 무상가입 중

■ 공제 가입 방법

◦ 본회 홈페이지(www.edu-safety.org)에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회에 입회한 회원 기관만 이용이 가능하니, 기존 회원 가입여부 및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회원 입회 안내 및 문의사항

- 입회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문의는 1600-5312 (문의 시간 평일 09:00~11:50, 13:00~18:00)로 문의 바랍니다.